

# 계약규정시행내규 [ 2008. 2. 19 내규 제298호 ]

재무처 02-6311-2228

- 개정 2008. 3. 20 내규 제300호
- 2009. 2. 6 내규 제331호
- 2009. 4. 14 내규 제345호
- 2010. 12. 23 내규 제425호
- 2012. 1. 11 내규 제456호
- 2012. 9. 7 내규 제472호
- 2013. 5. 29 내규 제493호
- 2013. 7. 25 내규 제498호
- 2013. 8. 28 내규 제500호
- 2014. 2. 11 내규 제514호
- 2014. 4. 3 내규 제521호
- 2014. 6. 5 내규 제522호
- 타 규정 개정 2014. 9. 17 규정 제757호
- 2014. 11. 27 내규 제532호
- 2015. 1. 1 내규 제553호
- 2015. 2. 9 내규 제559호
- 2015. 9. 14 내규 제578호
- 2015. 10. 19 내규 제582호
- 2016. 3. 9 내규 제591호
- 타 규정 개정 2016. 7. 26 규정 제886호
- 2016. 9. 6 내규 제600호
- 2016. 9. 26 내규 제60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규정 제4조 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영”및“규칙”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회계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자를 말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분임 또는 분임대리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예정가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5.10.19.)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개정 2008.3.20 12.1.11)
3.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개정 15.10.19.)

②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개정 15.10.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규정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5.10.19.)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08.3.20., 2015.2.9., 15.10.19.)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개정 15.10.19.)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15.10.19.)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개정 15.10.1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20., 2015.2.9)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사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8.3.20., 2015.2.9)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5.10.19.)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5.10.19.)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개정 12.1.11, 2015.2.9)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5.10.19.)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개정 16.9.26.)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신설 16.9.26.)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신설 16.9.26.)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신설 16.9.26.)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신설 16.9.26.)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신설 16.9.26.)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0.,15.10.19.)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 · 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3.20., 2015.2.9., 15.10.19.)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개

정 2015.2.9.)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15.10.19.)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 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내규 및 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2015.2.9., 15.10.19.)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15.10.19.)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정한다)가 감정평가 한 가격 (개정 15.10.19.)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정 15.10.19.)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개정 2015.2.9.,15.10.19.)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개정 15.10.19.)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개정 15.10.19.)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개정 15.10.19.)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5.10.19.)

③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5.10.19.)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규정 제18조에 의한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제1항의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

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규정 제27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15.10.19.)

###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내규에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15.10.19.)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2.1.11)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2.1.11)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2.1.11)

마. 인감증명서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5.10.19.)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게 한 경우에는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도시철도공사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0., 2015.2.9., 15.10.19.)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규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이 내규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규정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5.10.19.)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88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10.19.)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다른 지방공기업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5.10.19.)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9조(희망수량입찰의 대상범위)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5.10.19.)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15.10.19.)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 하는 것이 가격·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도시철도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개정 15.10.19.)
2. 규정 제37조 각 호의 사항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2조(경매)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23조 삭제 (2013. 5. 29)

제24조(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내규에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규칙 제23조의2제5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개정 2008.3.20., 2015.2.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5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규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내규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15.2.9., 15.10.19.)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경우 5억원 (개정 2015.2.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6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로 한다. (개정 15.10.19.)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개정 15.10.19.)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개정 15.10.19.)

③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9.7)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신설 2012.9.7)

⑤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5.10.19.)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9.7., 15.10.19.)

⑦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7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1조제3항 또는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8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개정 15.10.19.)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이다. 규정 제7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개정 15.10.19.)

2.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용역 등 (개정 16.9.26.)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개정 15.10.19.)

나.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개정 15.10.19., 16.9.26.)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9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계약의 목적
2. 품명·규격·수량·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개정 15.10.19.)
4. 지명상대자의 주소·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체 현황
6. 그 밖에 참고사항

[조 제목 개정 15.10.19.]

제30조(지명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7조의 규정은 지명입찰의 참가자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31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규정 제26조제3호에서 "재난 등의 경우"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5.10.19.)

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개정 15.10.19.)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규정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4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나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 가목,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4.2.11., 15.10.19.)

제35조(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 제목 개정 15.10.19.]

제36조(종합계약) 규정 제82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예규 “종합계약운영요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0., 2015.2.9., 15.10.19.)

제37조(공동계약) 규정 제83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0., 2015.2.9.)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8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개정 12.1.11, 15.10.19.)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5.10.19.)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5.10.19.)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10.19.)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날로 한다. (개정 15.10.19.)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규정 제16조제1항에서 "내규에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규정 제43조에 따른 공사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규정 제45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개정 15.10.19.)
6.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규정 제16조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 나. 규정 제16조에 의한 물량내역서
  - 다. 규정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8.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입찰방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입찰 및 낙

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개정 15.10.1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 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과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규정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규정 제38조제5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규정 제40조제1항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44조(입찰무효) 규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9, 15.10.19.)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개정 15.10.19.)

6.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개정 2015.2.9., 15.10.19.)

7. 규정 제16조제7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

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15.10.19.)

8.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개정 15.10.19.)

9. 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15.10.19.)

10. 규정 제45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개정 2014.4.3., 15.10.19.)

11. 규정 제83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개정 2014.2.11)

12. 규정 제90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신설 16.9.26.)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사장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개정 15.10.19., 16.9.26.)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규정 제45조제1항에서 “내규에서 정하는 공사”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5.2.9.)

1. 삭제(2015.2.9.)

2. 삭제(2015.2.9.)

제46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15.10.19.)

제47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규정 제47조제2항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48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49조(재공고 입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자가 없을 때
2.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을 때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

제5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15.10. .)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5.10.19., 16.9.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마다 확인한 후 입찰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한 후, 유효입찰 여부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발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개찰현장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발표한다.

⑤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 시에는 낙찰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단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한다.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1조(계약서의 작성)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51조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에 의한다. (개정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⑤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인지를 자기 보관분에 대하여 각자 비용부담으로 첨부하여 소인하고 각각 이를 보관한다. 다만, 규정 제51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규정 제75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는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52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용 서식(별지 제14호 서식 내지 제16호 서식)으로 작성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15.10.19.)

제52조의2(청렴계약 이행)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임대 등의 입찰공고(수의계약)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별표5), 특수조건(별표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1호의2)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14.6.5.)

② 제1항의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서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경우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14.6.5.)

[이조 신설 10.12.23]

제52조의3(부당계약조건 사용금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당계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담당자는 별표7의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금지를 준수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이조 신설 16.9.6.]

제5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54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규정 제6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55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 ·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도시철도공사의 지정계좌로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56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규정 제3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15.10.19.)  
[조제목 개정 2015.2.9]

제57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보증금을 규정 제38조 제3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피보증인의 명의를 도시철도공사일 것
2.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개정 15.10.19.)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규정 제89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개정 15.10.19.)
  -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개정 15.10.19.)
  -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개정 15.10.19.)

4. 보증보험증권 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 (개정 15.10.19.)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에 수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보증보험증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58조(정기예금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보증금을 규정 제38조 제3항 제5호 내지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15.10.19.)

제59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

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4.11.27, 2015.2.9., 1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15.10.19.)

제60조(주식양도증서)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5.10.19.)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 하였을 것 (개정 15.10.19.)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 확인필 인이 찍혀 있을 것 (개정 15.10.19.)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개정 15.10.19.)

제61조(보증기간 중 의무)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개정 15.10.19.)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개정 15.10.19.)
3. 「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개정 15.10.19.)
4.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개정 15.10.19.)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62조(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 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7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63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69조 내지 제71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개정 15.10.19.)

제64조(보증금의 반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중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공중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중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의 경우에는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5조(보증금 등의 수입조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제43조·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도시철도공사에 수입조치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상장증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 소유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4. 정기에금증서등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3.7.25.)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 수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수입조치)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16.9.26.)

제66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수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도시철도공사에 수입 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8조가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도시철도공사에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67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15.10.1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15.10.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3.7.25)

⑤ 삭제(2013.7.25)

[조 제목 개정 2013.7.25]

제68조(감독 및 검사) 규정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69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59조제1항 단서 및 규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71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6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규정 제6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72조(하자검사) ①규정 제66조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1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66조제2항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에 참고사항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규정 제6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5.10.19.)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가공·구매·용역 : 100분의 2

②규정 제6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15.10.19.)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개정 2014.4.3., 15.10.19.)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제7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규정 제68조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계약담당부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부서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15.10.19.)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

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9., 15.10.19.)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해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 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9., 15.10.19.)

4. 하자보수보증금을 규정 제3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④계약담당부서는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도시철도공사의 지정계좌로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15.10.19.)

⑤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2.9., 15.10.19.)

⑥계약담당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⑦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제6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7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규정 제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규정 제70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15.10.19.)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②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 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③제1항 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5.10.19.)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5.10.19.)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규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5.10.19.)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 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 지수 (개정 2015.2.9., 15.10.19.)

가. 정부 (신설 2015.2.9.)

나. 지방자치단체 (신설 2015.2.9.)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2015.2.9.)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2015.2.9.)

3.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규칙 제7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개정 2008.3.20., 2015.2.9., 15.10.19.)

⑤규정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15.10.19.)

⑥규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규정 제74조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5.10.19.)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금률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9., 15.10.19.)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⑨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5.10.19.)

제7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규정 제70조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②제75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5.10.19.)

제77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규정 제71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②제75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5.10.19.)

제78조(지연배상금률) 규정 제86조제1항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0.12.23)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규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규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계약 : 1000분의 2.5 (개정 15.10.19.)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조 제목 개정 10.12.23]

제78조의2(지연배상금의 계산)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수행·납품기한 내에 공사·용역·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준공·수행·납품한 때에는 규정 제6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수행·

납품기한 이후에 규정 제60조제6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수행·납품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규정 제60조제2항에서 정한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15.10.19)

2. 준공·수행·납품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수행·물품의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15.10.19)

②준공·수행·납품기한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준공·수행·납품기한으로 한다. (개정 15.10.19)

③지연배상금의 부과 대상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되 당초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정산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개정 10.12.23)

[조 제목 개정 10.12.23]

[제100조에서 이동 15.10.19.]

제78조의3(지연배상금의 징수) ①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8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지체상금을 수납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1. 일괄납품인 경우(개정 10.12.23)

지연배상금 = 총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2. 분할납품인 경우(개정 10.12.23)

지연배상금 = 미납 대금액 × 지연배상금율 × 지체일수

②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산출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6조제1항 후단에 의한 지연배상금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수부서는 지연배상금 면제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0.12.23, 15.10.19)

[조 제목 개정 10.12.23]

[제101조에서 이동 15.10.19.]

제7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규정 제88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5.10.19)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 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③부정당업자가 여러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개정 15.10.19)

④사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

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79조의2(청문) 사장은 규정 제88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조신설 14.11.27]

제80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계약담당자는 규정 제88조제2항 내지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88조 제6항의2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경영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2.6)

③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15.10.19.)

제80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규정 제8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규정 제88조의2제1항과 제8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 별표 3

2. 규정 제8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 별표 4

② 사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이조 신설 14.4.3]

### 제1절 물품구매(제조)계약

제81조(구매요청) ①구매요청부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명기한 물품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 요청하여야 한다.

#### 1. 공통사항

가.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신설 2013.5.29)

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제한경쟁일 경우 그 사유서 (신설 2013.5.29)

다. 물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규격서 (개정 2013.5.29)

라. 예산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3.5.29)

마. 납품장소 및 납기 (개정 2013.5.29)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개정 2013.5.29)

사. 계약특수조건안(단가계약의 경우 매회별 납품지시에정량 중 최대량 포함) (개정 2013.5.29)

아. 일반경쟁이 아닌 계약의 경우 그 사유서. 다만, 규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사유일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3.5.29.)

자. 조달청에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그 사유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16.3.9.)

1) 외국사업자로부터 조달받아야 하는 물품 (신설 16.3.9.)

2) 제3자구매단가계약 및 다수 공급자 계약 (신설 16.3.9.)

## 2. 완제품 구매

물품표준분류표에 의한 표준규격서 및 제품설명서

## 3. 제조가공품

가. 규격서, 도면 및 기타

나. 2단계 경쟁 등의 경우 규격의 평가기준

## 4. 수입물품

가. 물품명세서

나. 영문규격서

다. 경쟁규격대비표

라. 구매요청금액 산출내역

마.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

바. 물품관리자 확인서(수요부서의 장)

## 5. 운송보관

가. 운송거리

나. 운송수단

다. 운송조작비

라. 보관 장소

## 6. 수리 또는 수선

가. 수리수선 명세서

나. 내역서 및 시방서

## 7. 매각

가. 매각대상품목

나. 매각물품 보관 장소 및 상태

다. 매각조건

②구매요청부서는 구매 요청 시에 회계규정 제141조에 의거 예산통제를 필하여야 한다.

제82조(납품기한의 산정) 구매요청부서는 물품구매요청을 할 때 시중구매물품은 20일, 제조구매물품은 30일 이상의 구매사무 소요일수와 계약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납품기일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3조(예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①구매요청부서는 물품구매요청을 할 때 예산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예산산출기초조사서는 물품규격 내용에 따라서 규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작성하되 우선순위는 각호 가격순서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가격조사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원가조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는 당해 물품대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84조(구매요청서 접수 및 확인) ①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서(구매품의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13.5.29)

1. 품명 및 규격서 등 첨부 여부 (개정 2013.5.29)
2. 지방서 및 설계서 등 첨부 여부 (개정 2013.5.29)
3. 기타 계약조건의 타당성

②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구매요청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3.5.29]

제85조(계약품의서 작성) ①구매요청서의 검토가 끝나면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품의서를 작성한다.

1. 건명
2.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총액계약, 희망수량계약 등 제반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긴급공고 시 그 사유)
4.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항

②계약담당부서는 업체형편, 상관례에 따라 품종별 구매가 유리하거나 또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부서는 구매건별 일괄구매 또는 주품목과 부속품목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 할 수 있다.

제86조(수의계약 통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해당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명, 수량
2. 납품기한
3. 규격서
4. 계약조건 등

제87조(예정가격기초조사서 작성)①계약담당부서는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기초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예정가격기초조사서는 예산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예산산출기초조사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정가격기초조사서상의 조사가격이 구매요구액을 초과할 때에는 구매 요청부서에 사전 예산증액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규격 또는 기술의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 제19조제4항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9조(계약 체결시 접수서류) 계약담당부서는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단, 현금의 경우 도시철도공사 지정계좌의 무통장 입금증)
2.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전자계약서의 경우 제외)
3.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25호 서식)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 제외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90조(계약체결통보)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계약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요청부서에 계약체결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1조(계약내용 변경) ①구매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도시철도공사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증거서류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첨부하여 귀책소제와 지연배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개정 10.12.23)

②계약담당부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2조(계약금액의 변경)①제91조의 계약내용 변경사항 중 구매물량의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에 구매요청부서는 구매물량 증감조서를 첨부한 계약금액 변경 의뢰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는 전항의 계약금액 변경의뢰서에 의하여 변경계약(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을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증가할 때에는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보증금 및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93조(계약의 해약) ①구매요청부서는 계약의 해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의 해약방침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의 해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약방침
2. 계약이행촉구서
3. 삭제(2013.7.25)
4. 기타 계약해약에 관한 참고사항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고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도시철도공사에 귀속시킨다.

1. 규정 제88조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의 도시철도공사 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약품의서를 결재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해약을 통보한다.
2. 도시철도공사에 예수되어있는 계약보증금은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귀속사유를 명기하고 도시철도공사 수입으로 대체 수납시킨다.
3.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증권(사본), 해약통지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 상당액) 지급청구를 한다.
4. 수령한 보험금액은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귀속사유를 명기하고 도시철도공사 수입으로 수납시킨다.

③도시철도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은 반환하며 규정 제62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한다.

제94조(납품관계 서류검토) ①구매요청부서는 납품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1. 납품관계서류상의 품명 및 규격, 단위 등의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시험을 요하는 경우 시험의뢰서와 시험결과통지서와 일치여부
3. 납품장소, 검수자, 납품일자 및 예산과목 확인
4. 품질보증 여부

②제1항의 납품관계서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회계결의서 작성)①계약담당부서는 회계결의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1항(제 8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에서 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1. 대금지급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
2. 세금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4.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필요시)

②계약담당부서는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출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6조(감가계산)계약담당부서는 감가조건부로 합격판정 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요구부서 의견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다.

제97조(계약보증금의 환급)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기 수납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회계결의서를 동시에 작성한다.

제98조(하자보증금의 예수) 하자보증금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명기한 하자보증금 회계결의서를 대금지급용 회계결의서와 동시에 작성하여 대금지급 시 하자보증금을 수납한다.

제99조(하자보증금의 환급) 계약담당부서는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로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의 환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요청부서에 하자발생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제100조(지연배상금의 계산) 삭제(15.10.19)

[종전 제100조는 제78조2로 이동 15.10.19.]

제101조(지연배상금의 징수) 삭제(15.10.19)

[종전 제101조는 제78조3으로 이동 15.10.19.]

## 제2절 공사(용역)계약

제102조(설계서 내용 및 기준) ①설계서는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역서는 물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설계설명서에는 건명, 위치, 목적, 개요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용역)시공 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기간



변경 등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단일공사(용역)를 동일 회계 연도 내에 시기적 또는 물량적으로 분할 시행하거나 연차 시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미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차 공사시행 시 총 공사 예정금액을 설계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⑤설계내역서의 품과 중기가격은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되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표, 자재단가는 규정 제10조 및 이 내규 제6조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103조(계약의퇴) ①공사(용역)주관부서는 시행품의 결제가 끝난 지급자재 조달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퇴하여야 한다.

1. 건명
2.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신설 2013.5.29)
3.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제한경쟁일 경우 그 사유서 (신설 2013.5.29)
4. 총공사비(총 용역비)(개정 2013.5.29)
5. 도급예산액(개정 2013.5.29)
6. 계약기간(개정 2013.5.29)
7. 현장설명 장소(개정 2013.5.29)
8. 규정 제14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의퇴 시에도 적용)(개정 2013.5.29)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개정 2013.5.29)
10.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13.5.29.)

②제1항의 계약의퇴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요
2. 설계서(설계 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3. 설계도면
4. 예정공정표
5. 특수계약의 경우 특수한 설비, 장비 및 공법설명서
6. 산출기초(각종 건설기계 경비계산 등)
7.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서. 다만, 규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사유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계약특수조건(안)
9. 규정 제73조제1항 단서에 의거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분할 설계에 대한 근거서류
10. 기타 참고사항
11. 조달청에 공사(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그 사유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6.3.9.)

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조달받아야 하는 공사, 용역 (신설 16.3.9.)

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 등 (신설 16.3.9.)

제104조(계약품의서 작성) 계약의뢰서의 검토가 끝나면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품의서를 작성한다.

1. 개요
2.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제반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3. 현장설명, 입찰등록, 입찰일시 및 장소(긴급공고 시 그 사유)
4.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제105조(현장설명) ①계약담당부서는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와 장소를 공사(용역)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현장설명은 공사(용역) 주관부서에서 시행하고 현장설명조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한다.

③제2항의 현장설명에는 해당종별 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참가하여야 한다.

④공사(용역) 주관부서는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조서(입찰의 전제조건이 되는 시방서, 특기시방서, 공종별 물량산출조서 및 관계도면)를 1건으로 하여 현장설명 참석자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공사(용역)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106조(예정가격기초조사서 작성) ①계약담당부서는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기초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한다.

②예정가격기초조사서는 공사(용역)주관부서가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 및 설계가격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용역) 주관부서에 재검토하도록 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가계산 대상 공사(용역)의 원가계산에 전문지식을 요하여 공사 설계담당 직원으로서 소정 기일 내에 원가계산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원가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7조(계약체결 시 접수서류)①계약담당부서는 계약체결 시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2.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전자계약서의 경우 제외)
3.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보증인 포함, 별지 제25호 서식)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 제외
5. 삭제(2013.7.25)
6. 기타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서(별지 제9호 또는 제11호 서식)에 계약일반조

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사항 등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④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방법은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내역서 제출) ①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 주관부서 “내역서 검토 필” 날인을 받아 착공계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내역입찰 한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
2. 내역입찰 한 토목공사 중 재입찰에 부치는 토목공사
3. 토목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 이외의 부분에 관한 공사
4. 용역

②공사(용역) 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산출내역서 검토 시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품명, 규격, 수량의 적정여부 및 낙찰금액과 내역서 금액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9조(계약의 통보) 공사(용역)계약의 경우도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착공계) 공사(용역)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착공계(별지 제33호 서식) 및 현장대리인설정계(별지 제34호 서식)를 검토확인 후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년월일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계약기간의 변경) ①공사(용역) 주관부서는 계약 후 도시철도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기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증거서류와 변경공정표 및 계약기간변경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변경의뢰서를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2.9.7)

②계약담당부서는 전항에 규정된 계약기간변경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변경 후 그 결과를 공사(용역) 주관부서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9.7)

③계약담당부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을 연장한 계약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에 보증서의 효력이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된 경우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2.9.7)

제112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 후 설계물량의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한 때는 공사(용역)주관부서는 계약금액변경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설계변경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변경요청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는 전항의 계약변경요청서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변경계약(별지 제35호 서식)을 체결한다. 이 경우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보증금 및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13조(준공정산) 지질조사, 굴착, 준설 등 공사(용역)의 성질상 준공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확정 물량을 산출할 수 없는 특수공사(용역)인 경우로서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 검사 후 공사(용역)주관부서에서 준공정산을 하고 준공정산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정산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사업 중지와 재개) ①공사(용역)주관부서에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중지된 공사(용역)를 재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부서에 중지 또는 재개일시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는 공사(용역)중지 또는 재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계약변경조치를 취하고 공사(용역)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5조(기성고 및 준공검사) ①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원이 공사(용역) 주관 부서에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 한다.

②용역(준공,기성)검사원 및 용역(준공,기성)검사조서는 별지 제36호 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16조(계약해제 및 해지절차) ①공사(용역)주관부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해제 및 해지방침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로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해제 또는 해지방침
2. 계약이행촉구문서
3. 삭제(2013.7.25)
4. 기타 계약해제 및 해지에 관한 참고사항

②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하자조치) ①공사 주관(시설관리)부서는 소관시설의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감독한다.

②공사 주관(시설관리)부서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하자보수이행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촉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이행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보험 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최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 계약담당부서는 공사주관(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하자보증금으로 직영보수를 하거나, 제3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그 결과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18조(회계결의서 작성) ①계약담당부서는 공사(용역)주관부서로부터 기성고 및 준공검사 서류를 접수하면 회계결의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에서 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금지급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
2. 세금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별지 제19호 서식)
5.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필요시)

②공사(용역)계약의 경우도 제9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계약보증금의 환급) 공사(용역)계약의 경우도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하자보증금의 예수) 공사계약의 경우도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지연배상금의 징수) ①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규정 제8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수납하고 대금을 지급한다.(개정 10.12.23)

$$\text{지연배상금} = \text{계약금액} \times \text{지연배상금률} \times \text{지체일수}$$

②계약기간 내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검사결과 검사자가 재시공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재시공 지시일을 지연배상금 기산일로 한다.(개정 10.12.23)

③당초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 정산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개정 10.12.23)

④규정 제86조제1항 후단에 의한 지연배상금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용역)주관부서는 지연배상금면제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0.12.23)

[조 제목 개정 10.12.23]

제122조(하자보증금의 환급) 공사계약의 경우도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123조(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사장은 규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규정 제9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없

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에 참고사항

②사장은 규정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정 제91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제124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①사장은 규칙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할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

제125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규정 제99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하고, 간사는 재무처장이 한다. (개정 16.7.26.)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나 간사가 위촉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직제순에 의한 해당처(부)장 또는 부서 차하위자로 위임한다.
3.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처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제척사유자를 배제한 분야(집단)별 각 2배수 이상의 후보를 전산 입력 후 랜덤추첨하여 선발한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를 위한 외부위원의 경우 1배수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15.1.1.]

제125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장은 제125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5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조 신설 16.9.26.]

제12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8조(심의·의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결은 2회 연속은 지양한다. (개정 2008.3.20, 2012.9.7)

1. 규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동한 제4호의 사유가 법령, 조례 및 정관, 행정자치부 예규의 변경의 경우 (개정 2015.2.9.)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조달청 3자단가 계약물품의 구매 등)

[ 제목개정 2012.9.7]

제129조(심의요구) 각 소속장은 규정 제9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 및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의안 9부를 작성하여 상정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심의요청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처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개정 2014.9.17)

제131조(심의결과 통보)①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한 계약심의결정서(별지 제40호 서식) 및 의결서

(별지 제41호 서식)를 심의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요청부서는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3조(청렴계약옴부즈만의 참관)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투명성, 공정성 등이 필요한 경우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심의·의결 과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12.9.7]

제134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보관한다.

[ 본조 신설 2012.9.7]

## 제8장 보 칙

제135조(계약의 특례) 건당 구매·수리·용역금액이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견적서 첨부를 생략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 징구로 집행할 수 있다.

[ 제133조에서 이동 2012.9.7]

[ 종전 제135조는 제137조로 이동 2012.9.7]

제136조(계약실적의 보고) 현업기관의 장은 매 월말(연말)에 계약실적을 작성하여 본사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 제134조에서 이동 2012.9.7]

제137조(예규 등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고시·통첩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20., 2015.2.9)

[ 제135조에서 이동 2012.9.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내규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내규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내규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회계규정시행내규 “제9장 계약”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회계규정시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94호 서식, 제97호 서식, 제100호 서식 내지 제105호 서식, 제107호 서식 내지 제150호 서식을 각각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내규는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입찰 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별표 2 제3호다목·제4호사목·제8호다목·제9호다목·제12호,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계약부터 시행하되, 제52조의2 별표5의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이전에 기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이전에 기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이전에 기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4.4.3)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1조 관련)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시설	5년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축구를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차. 부지정지	2년
카. 조정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5년
(3) "(1) 및 (2)" 외의 시설	3년
파. 기타 토목공사	1년
하.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 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외의 건축물중 주요 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자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자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 온실설치공사	2년
(14) 보링	1년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년
(16) 판금	1년
(17) 보일러설치	1년
(18) 포장	2년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0) 자갈도상 철도·궤도공사	1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2) 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 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3년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가. 성곽	
(1) 석성(石城)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2년

(3)전축성(塼築城)	3년
(4)목책성(木柵城)	1년
나. 탑·석조물	
(1) 석불(石佛)·부도(浮屠)·비석(碑石)·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지석묘(支石墓)·석빙고(石氷庫)·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5년
(2) 전탑(塼塔)	3년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7년
다. 목조건축물	
(1) 지붕	
(가)산자(榦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3년
(나)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다)역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2년
(라)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2) 목부재(木部材)	
(가)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3년
(나)그 밖의 구조재	2년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1년
(4) 기초 및 기단	
(가)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나)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7년
(다)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월대의 지대석	5년
(라)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5) 미장 및 아궁이·굴뚝·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2년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2년
라. 담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5년
(2) 그 밖의 사괴석담	3년
(3) 돌담·자연석담·관축담·토담·전축담·와편담	2년
마. 분묘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2년
(2) 구조부	
(가)적석총(積石塚)·석곽묘(石槨墓)	5년
(나)전축분(塼築墳)	3년
(다)목곽묘(木槨墓)	1년
(3) 병풍석(屏風石)	3년
바. 도로	

(1) 암거·배수로·측구·맨홀	2년
(2) 포장	
(가) 박석·포방전	2년
(나) 마사토·강회다짐·기타 혼합토 등	1년
사. 철물	
(1) 장식철물·보호철물·관리철물	2년
(2) 구조철물·보강철물	3년
아. 조경·식물보호·밭갈지정비·벽화 등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2) 식물보호	3년
(3) 밭갈지 정비	2년
(4) 불상개금·도금·탱화·옷칠 등	5년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1년



[별표 2](개정 10.12.23, 2012.1.11, 2013.5.29, 2014.2.11, 2014.4.3., 2015.2.9., 15.10.19., 16.9.2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9조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p>1.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p> <p>가. 부실별점이 150점 이상인 자</p> <p>나. 부실별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p> <p>다. 부실별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p> <p>라. 부실별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p> <p>마. 부실별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p> <p>바. 부실별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p> <p>2.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개정 2013.5.29)</p> <p>가. 공사</p> <p>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p> <p>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p> <p>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p> <p>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p> <p>나. 물품</p> <p>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p> <p>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p> <p>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p> <p>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p> <p>3.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p> <p>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p>	<p>1년10월 이상 2년 이하</p> <p>11월 이상 1년1월 미만</p> <p>7월 이상 9월 미만</p> <p>5월 이상 7월 미만</p> <p>3월 이상 5월 미만</p> <p>1월 이상 3월 미만</p> <p>1년10월 이상 2년 이하</p> <p>11월 이상 1년1월 미만</p> <p>7월 이상 9월 미만</p> <p>2월 이상 4월 미만</p> <p>1년10월 이상 2년 이하</p> <p>11월 이상 1년1월 미만</p> <p>7월 이상 9월 미만</p> <p>2월 이상 4월 미만</p> <p>11월 이상 1년1월 미만</p>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제한기간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5월 이상 7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4.4.3)	2월 이상 4월 미만
4. 규정 제8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7월 이상 9월 미만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7월 이상 9월 미만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월 이상 7월 미만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월 이상 5월 미만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월 이상 5월 미만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신설 2014.4.3)	3월 이상 5월 미만
5. 규정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2월 이상 4월 미만
6. 규정 제88조제2항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5.29)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월 이상 7월 미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월 이상 4월 미만
7. 규정 제8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에서 2명 이상의 사람(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5월 이상 7월 미만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1월 이상 1년7월 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제한기간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인 경우	5월 이상 7월 미만
8. 규정 제8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5월 이상 7월 미만
나. 삭제 (2013.5.29)	
다. 규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월 이상 3월 미만
라. 규정 83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월 이상 3월 미만
마.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규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개정 2014.4.3., 16.9.26.)	1월 이상 3월 미만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신설 2013.5.29)	1월 이상 3월 미만
9. 규정 제8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신설 2013.5.29)	1년 6월 이상 2년이하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개정 2013.5.29)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개정 2013.5.29, 2014.4.3)	5월 이상 7월 미만
10. 규정 제8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월 이상 7월 미만
11. 규정 제8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3.5.29)	5월 이상 7월 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제한기간
12. 규정 제88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 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개정2014.4.3)	2년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개정2014.4.3)	1년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개정2014.4.3)	6월
라. 1천만 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개정2014.4.3)	3월
13. 규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월 이상 3월 미만
14. 규정 제88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월 이상 4월 미만
15. 규정 제8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2월 이상 4월 미만
16. 규정 제88조제2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2월 이상 4월 미만
17. 규정 제88조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월 이상 4월 미만
18. 규정 제88조제2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5월 이상 7월 미만
19. 규정 제88조제2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7월 이상 9월 미만
20. 규정 제88조제2항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월 이상 2년 미만
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21. 규정 제88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월

※ 비 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용”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용”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표 3] (신설 2014.4.3., 개정 2015.2.9., 2016.9.26.)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 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0%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5%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4%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3%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2%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
2.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0%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5%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1.5%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0%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5%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5%
3.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 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5%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3%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 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5%
4. 규정 제8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5%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4%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4%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3%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2%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2%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2%
5. 규정 제8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개정 16.9.26)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3%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7.5%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3%
6. 규정 제8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3%
나.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규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 16.9.26.)	0.5%
다. 규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0.5%
라. 규정 제83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0.5%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0.5%
7. 규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0.5%
8. 규정 제88조제2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1.5%
9. 규정 제88조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5%
10. 규정 제88조제2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4%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표 4] (신설 2014.4.3., 개정 2015.2.9., 2016.9.26.)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0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 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30%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5%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12%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9%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6%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3%
2.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30%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5%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12%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4.5%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30%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5%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12%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4.5%
3.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는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5%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9%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 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5%
4. 규정 제8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5%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12%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12%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9%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6%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6%	
5. 규정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5%
6. 규정 제88조제2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9%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7. 규정 제8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개정 16.9.26.)		1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9%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2.5%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9%
8. 규정 제8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9%
나.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규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 16.9.26)		1.5%
다. 규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라. 규정 제83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5%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5%
9. 규정 제8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16.9.26.)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30%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5%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		9%



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답합한 자	
10. 규정 제8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16.9.26.)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5%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11. 규정 제8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9%
12. 규정 제88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16.9.26.)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0%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5%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9%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4.5%
13. 규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5%
14. 규정 제88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4.5%
15. 규정 제8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4.5%
16. 규정 제88조제2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4.5%
17. 규정 제88조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5%
18. 규정 제88조제2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9%
19. 규정 제88조제2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12%
20. 규정 제88조제2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16.9.26.)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30%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5%
21. 규정 제88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4.5%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5%

비고

-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표 5] (신설 2014.6.5., 2015.2.9., 15.10.19)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제52조의2관련)**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이하 ‘공사’ 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임대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11호의2 서식] 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1호의3 서식] 를 교부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별지11호의2 서식]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동 법령에 위반

하여 고용한 업체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⑤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에도 전관예우를 차단을 위해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 선정평가지 불이익(-4점 이내)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사업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제한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 -4점
2.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3점
3.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2점
4.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1점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입찰참가자격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7조(손해배상) ①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별표 6] (신설 2014.6.5., 2015.2.9., 15.10.19.)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52조의2관련)**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용역·물품·임대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게 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6조(손해배상) ①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별표 7] (신설 2016.9.6.)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 (제52조의3 관련)**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2.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우리공사 의견 강요
3.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
4.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5. 계약기간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
6. 포괄적,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7. ‘그 밖에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
8.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
9.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비공개

[별지 제1호서식]

## 예 정 가 격 조 서

건명 :

예 정 가 격	원
---------	---

₩ \_\_\_\_\_

자료 : 별첨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예정가격결정자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5.10.19)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사항	등록기관	도시철도공사	등록일자	. . . .
	유효기간	. . . . 부터 . . . . 까지		
	등록종목 (세부품목)			
<p>상기인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시행내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유자격자로 귀사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 . . .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p>				
<p>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인)</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p>※주의사항</p> <p>1. 이 증서내용의 변경은 등록기관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p> <p>2. 기재사항중 추가 또는 정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p>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5.10.19)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일반 제한 지명             </div> <h2 style="margin: 0;">입찰참가통지서</h2> </div>			
입찰 참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내용	입찰건명		
	현장설명	일시 :	장소 :
	입찰	일시 :	장소 :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까지	
	서류제출처	(전화번호 :                    )	
<p>우리 공사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 .</p> <h3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h3>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담당자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5.10.19)

입찰참가신청증				처리기간
				즉시
입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공사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참가 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담당자			성명	①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입찰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계 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W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p>본인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시행내규」 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 : 산출내역서(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span style="float: right;">㉠</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p>				

[별지 제7호서식]

입찰서		입찰금액														
		입찰번호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1. 공고번호 : 제 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2. 입찰건명 :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3. 준공(납품)연월일 :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본인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시행내규」에 의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첨부 : 산출내역서(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작성 시 유의사항>														
상호 또는 법인명칭 :		1. 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정사인펜만을 사용합니다.														
전화번호 :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주소 :		- 바르게 표기한 것 : ●														
대표자 : (인)		- 틀리게 표기한 것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 신청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입합니다.														
		4. 매 금액 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공란으로 두거나 2개소이상 표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입  
(찰) 조 서  
견 적

입찰건명				
입찰일시	200    년    월    일			
입찰자 견적자    성명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집행자 : (인)

입회자 : (인)

입회자 : (인)



[별지 제10호서식](개정 10.12.23, 2015.2.9)

<b>물 품 구 매 표 준 계 약 서</b>		공고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서	발 주 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표자					
계 약 내 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W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W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W                      )					
	지 연 배 상 금 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납 품 일 자	.   .   .   ~   .   .   .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과 계약상대자는 불입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불입서류 : 1.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인					
계 약 상 대 자		인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별지 11호의2서식](신설 10.12.23) (개정 2012.9.7, 2013.5.29., 2014.6.5., 15.10.19)

(업체제출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11호의3서식](신설 14.6.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교부용)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계약의뢰 건명을 기재)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공사, 용역, 물품, 임대 등)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시민감사옴부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0000-0000  
FAX 0000-0000

20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발주부서)의 장 ○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계약부서)의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5.9.14)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W                      )
3. 계약보증금 : 금                      원정(W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공사에서 계약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2.9.)

##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수신 :	발신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문서번호 :	계약건명 :
납품요구일 :	납품요구번호 :
계약일 :	(계약번호 : )

다음과 같이 납품을 요구하오니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장소 :

납품기한 :				분할납품 여부	가·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검수소요일수 : 납품기한에 검수소요일수(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전면](개정 10.12.23, 2015.2.9)

<h2>물 품 납 품 서</h2> <p style="text-align: right;">(계약서 작성 생략용)</p>						
계약일자 :     년   월   일			납품기한 :     년   월   일			
계약금액 :                   (W           )			수정계약금액 :			
<p>납품장소 :</p> <p>이면의 기재사항을 승낙 하고 아래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상대자 :                                  상호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    (인)</p>						
<p>아래 물품이 계약되었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인)</p>						
<p>검수요청일 :</p> <p>아래 물품의 검수결과 합격되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검수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인)</p>						
<p>아래 물품을 정히 영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수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인)</p>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별지 제14호서식 후면] (개정 10.12.23, 2015.2.9)

## 승락사항

1. 물품은 사양서, 도면, 견본, 기타 공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공사에서 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3. 검수이전에 발생한 반입물품의 망실, 훼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1,000분의 ( )에 해당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공사에 납부한다. 다만, 지체사유가 공사의 사정에 의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 납품된 물품이 공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다만, 납품된 물품이 부적합하더라도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는 그에 상응한 감가조건으로 납품케 할 수 있습니다.)
  -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계약상대자(그 대리 또는 사용자 포함)가 물품의 납품검사 혹은 계약이행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제5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규정 제88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7.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본 납품금액의 청구 및 영수증에 사용한 인장과 본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을 대조하여 상위없을 경우에는 공사는 지불에 대한 여하한 책임이 없습니다.
8. 지연배상금 기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물품대가 등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수조항 :



[별지 제15호서식 후면](개정 10.12.23, 2015.2.9)

## 승락사항

1. 용역(성과물)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계약조건 등 공사에서 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의 검사 시 성과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성과물 원본 1부에 대하여 검사하며 필요시에는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용역기한 내에 성과품을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용역금액 1000분의 ( )에 해당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지체사유가 공사의 사정에 의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4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 나. 용역기한 까지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계약상대자(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포함)가 용역의 준공검사 혹은 본 계약이행에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5. 제4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위약금으로 용역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금액의 청구 및 영수증에 사용한 인장과 본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과를 대조하여 상위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지불에 대한 여하한 책임이 없습니다.
7. 지연배상금 기타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가 등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전면](개정 10.12.23, 2015.2.9)

공사 발 주 서

(계약서 작성 생략용)

계약일자 :    년    월    일	준공기한 :    년    월    일
계약금액:                  (W          )	준공정산금액 :                  (W          )

이면의 기재사항을 승낙 하고 아래 공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상호 :  
          대표자 :    (인)

아래 공사가 계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책임자 :                                  (인)  
          대표자     :    (인)

준공검사요청일 :

아래 공사의 준공검사결과 합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책임자 :                                  (인)  
          담당자     :    (인)

아래 공사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책임자 :                                  (인)  
          대표자     :    (인)

내 역 서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별지 제16호서식 후면](개정 10.12.23, 2015.2.9)

## 승락사항

1. 공사에서 제시한 지방서 및 도면에 의거 공사에서 행하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공사의 변경에 의하여 일시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설계변경 하는 일이 있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내역서상이 단가로 증감합니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비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 인계전에 발생한 화재, 기타 물적,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집니다.
4.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간의 하자보증 책임을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금액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공사에 납부합니다. 다만, 지체사유가 공사의 사정에 의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6.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기일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
  - 나.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계약상대자(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 포함)가 공사의 준공검사 혹은 본 계약 이행에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7. 제6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위약금으로 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규정 제88조에 의거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본 도급금액의 청구 및 영수증에 사용한 인장과 본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과를 대조하여 상위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지불에 대한 여하한 책임이 없습니다.
9. 지연배상금 기타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가 등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b>계 약 보 증 금 납 부 서</b>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W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W )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 .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상호 또는 법인명칭 :</span> <span>전화번호 :</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주 소 :</span> <span></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대 표 자 :</span> <span>(인)</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주민(법인)등록번호 :</span> <span></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p> </div>			
계약담당자 성명 : (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14.11.27)

## 각 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시행내규」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 담당자 :

문서번호 :  
 발 신 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면허·등록번호 등	
제 재 내 용	제 재 근 거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 재 기 간	. . . . . ~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그 밖의 참고사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별지 제23호서식]

## 예 산 산 출 기 초 조 사 서

부 서 명 :

예산과목 : (관)                      (항)                      (목)  
 산출금액 : 일금    원정(W    )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액	
							단 가	금 액

200 . . . .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 예 정 가 격 기 초 조 사 서

담 당	팀 장

○ 건 명 :

○ 예산과목 : (관)                      (항)                      (목)

○ 산출금액 : 일금                      원정(W                      )

상기 건명에 대한 예정가격기초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예 산 액	조 사 금 액		비 고
	발 주 부 서	구 매 계 약 팀	

200    년    월    일

작성자 : 직책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공사와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13.7.25., 2015.2.9., 15.9.14)

## 동 의 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계약건명			

당사는 귀 공사와 계약체결 한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에 동의하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동 의 내 용

200 . .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15.9.14)

( )대금지급청구서

청구금액 : 일금 원정(W )

청 구 내 역

계 약 번 호 :

계 약 명 :

계 약 금 액 :

기 성 액 :

청 구 액 :

잔 액 :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점포명 ( )

. 계 좌 번 호 ( )

위 금액을 청구함.

200 . . .

청 구 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현 장 설 명 조 서

1. 건 명 :
2. 입찰일시 :
3. 설명일시 :
4. 설명장소 :
5. 설명내용 :
6. 설 명 자 : 직                      성 명
7. 설명 청취자 명단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기술면허번호	비 고

[별지 제31호서식](삭제 2013.7.25)

[별지 제32호서식]

## 공 정 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착공년월일 : 20    년    월    일

준공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

발주부서확인	
소속	
직명	
성명	

종 별	수 량	전체공사에 대한비율(%)	공 정				비고
			월	일	월	일	

위 공사에 대한 시공 공정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 착 공 계

공 사 명 :

도 급 자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착공년월일 : 20 년 월 일

준공 기한 : 20 년 월 일

발주부서확인	
소 속	
직 명	
성 명	①

상기와 같이 착공하겠기 자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15.9.14)

### 현장대리인설정계

공 사 명 :

상기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으로 허가인을 설정하여 제출합니다.

현장대리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①

기술면허종별 및 유별

기술면허번호 제 호

발주부서확인	
소속	
직명	
성명	①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명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15.9.14)

용역(준공, 기성) 검사원

계약건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W                      원)

계약상대자 :

계약기간 :

용역착수일 :

용역수행기간 :

검사요청일 :

검사요청 금액 : 일금                      원정(W                      원)

용역수행내역 :

위와 같이 용역을 (기성, 준공)완료하고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7호서식]

## 용역(준공, 기성)검사조서

계약건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W                      원)

계약상대자 :

계약기간 :

용역착수일 :

용역수행기간 :

검사요청일 :

검사완료일 :

검사금액 : 일금                      원정(W                      원)

감액금액 : 일금                      원정(W                      원)

감액사유 :

용역검사 세부내역 : 첨부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용역(기성, 준공)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검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8호서식]

(표 지)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월일	20 . . . .	(제 차)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자	팀(실)장		
제 출 년월일	20 . . . .		

[별지 제39호서식]

(내 지)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주요심의내용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 다. 기 타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5.2.9.)

<h2 style="margin: 0;">계약심의결정서</h2>		
<p>건 명 :                  상기 계약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p>		
<p>결 정 내 용</p>		
<p>주 제</p>	<p>결 의 사 항</p>	<p>비 고</p>
<p>첨부 : 의결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20 . .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p>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5.2.9.)

<h2 style="margin: 0;">의 결 서</h2>					
<p>건 명 :                  상기 계약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p>					
<p>심 의 내 용</p>					
<p>주 제</p>	<p>담당부서</p>	<p>성 명</p>	<p>가 · 부</p>	<p>심의의견</p>	<p>서 명</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20 . .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간사 (인)                 </p>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16.3.9.)

## 조달 계약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관련근거	
조달계약사유	

20 . .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